

문서번호	청소행정과-19530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의성	조성진	박현식	손정수	전결 06/01 김병환
협 조	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담당 주무관 재활용담당		이용식 김용환 김하연 김원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계획

2015.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본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
-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 기본계획(청소행정과-4859, '15.2.9.)

□ 개정사유

- 생활폐기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의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본부' 내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추가

□ 주요 개정내용

- 위원장 격상(안 제6조)
 - 운동본부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함
-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운동본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로 정책자문 기능 및 전문성 강화

□ 추진일정

- 규정 제정 방침 수립 : '15. 6. 1.(월)
- 공포(발령) 및 시행 : '15. 6. 4.(목) 예정

-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 규정 일
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에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 관련 정책의 전문적 자문강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본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
- 나. 본부 위원장 직무대행을 부구청장 등으로 지정(안 제6조제3항)
- 다. 본부에 정책자문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안 제9조)
 -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2년 임기, 연임 1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 3) 부패/인권/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를 “부구청장,”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본부에 정책자문 기능강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회는 본부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정책관련 자문에 응하며,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로 하고, 제10조 중에서 “본부의 회의에 참석”을 “본부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장 등) ① 본부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 중에서</u> 청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6조(위원장 등) ① ----- -----구청장-----</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위원 중에서 부구청장,-----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본부에 정책자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④ 자문위원회는 본부위원회의</p>

<p>제9조(실비보상) 본부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 (생략)</p>	<p><u>위임사항 및 정책관련 자문에 응하며,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위원장이 정한다.</u></p> <p>제10조(실비보상) 본부 및 자문위원회의 ----- ----- -----.(현행 제9조에서 이동)</p> <p>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p>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본부 구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소액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중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소액 발생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서조항(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행정국 청소행정과장 박현식